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415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발의일자 : 2023년 10월 16일
- 라.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3일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조례 내 일본어 투 표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사항을 일괄로 정비하여 자치 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일본어 투 표현 “한하여” 정비
- 나.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제명, 인용조문 현행화
- 다. 조직개편(조직명 및 사무이관)에 따른 부서명 정비
- 라. 그 외 경미한 오기 정정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가. 조례안의 개요

- 동 조례안은 서울시 조례에 남아있는 일본어 투 표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현행화, 조직개편으로 미반영된 변경사항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고자 제출됨.

나. 조례안의 일괄개정 사항

- 법제처는 지난 2006년부터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법령을 한글화하는 한편 법령에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용어로 고치며,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문장 표현을 정리하여 간결한 문장으로 바꿈으로써 입법 의도가 한눈에 드러나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 동 조례안은 일본식 용어인 ‘~에 한하여’ 등을 순화된 용어로 정비하고,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정비 등을 위해 서울시 조례 827건¹⁾ 중 107건을 대상으로 138개의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1) 서울시 조례와 규칙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에 따르면 조례 827건, 규칙 231건, 훈령 32건, 예규 13건이 등록되어 있음.(2023.12.8.기준)

- 세부 정비 내용으로는 일본어 투 표현 ‘한하여’ 등에 해당하는 용어 순화 112개와 제명·인용 조문 현행화 13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정비 12개, 그 외 경미한 오기 정정 1개임[참고자료 1].

< 조례안 정비 세부내용 >

구 분	유형별 정비내용 사례
일본식 용어 순화 (11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하여 ⇒ 한정하여 ◦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 2회에 한하여 ⇒ 두 차례까지만 ◦ 경우에 한하여 ⇒ 경우에만 ◦ 방법에 한하여 ⇒ 방법으로만 ◦ 자(사람)에 한하여 ⇒ 자(사람)에게만
제명, 인용조문 현행화 (13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재해영향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정비 (1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소통기획관 ⇒ 홍보기획관 ◦ 갈등관리 협치과 ⇒ 시민협력과 ◦ 시정연구담당관 ⇒ 창의행정담당관
그 외(1건)	◦ 경미한 오기 정정

- 동 조례안은 일괄개정 방식으로 용어 순화와 함께 단순한 제명, 조문변경 등의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법적 적합성 및 안전성, 시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하겠음.

담당 조사관	연락처
송선옥	02-2180-8064

[참고자료1]

< 정비대상 조례와 조문 >

조문	정비대상 조례	정비조문	정비내용
제2조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별표1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
제3조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4조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한하여 → 한정하여
제5조	서울특별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6조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제8조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7조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한하여 → 한정하여
제8조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시민소통기획관 → 홍보기획관
		제7조제5항	갈등관리협치과장 → 시민협력과장
제9조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21조제4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10조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제9호	「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제11조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1회에 한한다 → 한 차례만 한다
제12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4조의2제4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13조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령 보상 조례	제16조제3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26조제2항	조직담당관 → 창의행정담당관
제14조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호에 한하여 → 제2호는

조문	정비대상 조례	정비조문	정비내용
제15조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제11조제5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16조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제2조	경우에 한하여 → 경우에만
제17조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18조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제5조제5항	차례에 한하여 → 차례에만
제19조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4항	1차에 한하여 → 한차례만
제20조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때에 한하여 → 때만
제21조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제6조	한하여 → 한정하여
제22조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	1차에 한하여 → 한차례만
제23조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제20조제1항	1차에 한하여 → 한차례만
제24조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5조제4항	1차에 한하여 → 한차례만
제25조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4조의2제3항	1차에 한하여 → 한차례만
제26조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한하여 → 한정하여
제27조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 →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관
제28조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5조	한하여 → 한정하여
제29조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1	한강사업본부장 → 미래한강본부장
		별표 2	교통정보과 → 미래첨단교통과
제30조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제18조제3항	경우에 한하여 → 경우에만
제31조	서울특별시 도로정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7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 행자 →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제32조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9조제1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25조제5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33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제5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조문	정비대상 조례	정비조문	정비내용
제34조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한하여 → 한정하여
제3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3제1항제4호	경우에 한하여 → 경우에만
제36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7조제3항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제25조제4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37조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38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27조제2항	경우에 한하여 → 경우에만
제39조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5조제4항	차례에 한하여 → 차례만
		제6조제2항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하 "동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
		제8조제3항	제5조 → 제6조
		제9조제1항	시행규칙 제15조제4항 →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제11조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시행규칙 별지 제6호 → 동물정보시스템에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동물정보시스템
		제15조제2항	제9조 → 제6조
		제25조제1항	제5조 → 제6조
제25조제2항	제5조 → 제6조		
제40조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2조제17호
제41조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제23조제3항	1차례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42조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조문	정비대상 조례	정비조문	정비내용
제43조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44조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16조제4항	차례에 한하여 → 차례만
제45조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34조제3항	경우에 한하여 → 경우에만
제46조	서울특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47조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48조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49조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	제6조제3항	차례에 한하여 → 차례까지만
제50조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제5조제1항	의원회 → 위원회
제51조	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52조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사람에 한하여 → 사람에게만
		제7조제1항	자에 한하여 → 사람만이
		제12조의2제2항	허용하되, 1회에 한하여 → 허용하되, 연장 → 한 차례만 연장
제53조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의3제3항	관리청에서는 → 관리청은
			경우에 한하여 → 경우에만
제54조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55조	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11조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56조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제5조제3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57조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10조제5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58조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제5조제7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59조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60조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4조제2항제8호	한하여 → 한정하여

조문	정비대상 조례	정비조문	정비내용
제61조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옹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7조제5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62조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5조제3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63조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제16조제1항	시행규칙 제52조의3 → 시행규칙 제73조의8
제64조	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65조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2조제4호	한하여 → 한정하여
제66조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67조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9조제7항	한하여 → 한정하여
제68조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제1항	한하여 → 한정하여
제69조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제5항	1차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70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제3호	한하여 → 한정하여
		제4조제1항제9호다목	방법에 한하여 → 방법으로만
		제5조제3호	방법에 한하여 → 방법으로만
		제8조제4항제1호	한하여 → 한정하여
		제9조제1항제4호	한하며 → 한정하며
		제9조의2제1항제1호	한하여 → 한정하여
		제10조제1항제1호	판매시설에 한하여 → 판매시설만 가능하며
		제10조제1항제2호	한한다 →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한한다 →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한하여 → 한정하여
		제11조제1항제6호	한하여 → 한정하여
		제12조제2항제1호	현수막에 한하여 → 현수막만을
		제13조제3항제1호	안에 한하여 → 안에서만
제16조제3호	내용에 한하여 → 내용에 한정하여		
제17조제3항제2호	한하여 → 한정하여		
제71조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제8조제2항	경우에 한하여 → 경우에만
제72조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제6조제3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73조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조문	정비대상 조례	정비조문	정비내용
제74조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5조제3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75조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제4항	자에 한하여 → 자에게만
제76조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3조제1항	경우에 한하여 → 경우에만
제77조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제8조제1항	자원순환과장 → 자원회수시설과장
제78조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	한하여 → 한정하여
제79조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80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4항제1호	하천관리과장, 안전총괄과장 → 치수안전과장, 재난안전정책과장
		제10조제1항	안전총괄과장 → 재난안전정책과장
			안전총괄과의 → 재난안전정책과의
제81조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한하여 → 한정하여
		제10조의2제3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82조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제17조제3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83조	서울특별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2회에 한하여 → 두 차례까지만
제84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의2제2항	한하여 → 한정하여
제85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제1항	차례에 한하여 → 차례만
제86조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1차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87조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제3조제5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88조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8조제4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89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	제9조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90조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6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91조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제8조제1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92조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조문	정비대상 조례	정비조문	정비내용
제93조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제3조	택시운송사업자에 한하여 → 택시운송사업자에게만
제94조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95조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제2항	한하여 → 한정하여
제96조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97조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1호	한한다 → 한정한다
제98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법 제27조제6항 → 법 제27조제9항
제99조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별표 2	한강사업본부장 → 미래한강본부장
제100조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시정연구담당관 → 창의행정담당관 한하여 → 한정하여
		제6조제6항	시정연구담당관 → 창의행정담당관
제10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	협약하여 1회에 한하여 → 협의하여 일시 → 한 차례만
			경우에 한하여 → 경우에만
제102조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자에 한하여 → 자에게만
제103조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제4항	사람에 한하여 → 사람에게만
제104조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105조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106조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107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2조제5항	한하여 → 한정하여
제108조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9조제4항	한하여 → 한정하여